붙임1.

긴급입찰 사유서

□ 사업 개요

○ **(사업명)** AI 기반 발파 설계 패턴 자동화 시스템 개발

○ **(계약기간)** 계약일로부터 1개월

○ **(예정금액)** 99,89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□ 긴급입찰 사유

○ 본 용역은 발파 설계 변수와 파쇄암 입도분포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, 목표 입도분포에 적합한 발파 패턴을 자동 추천할 수 있는 AI 기반 발파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업으로, 연구과제 추진 일정에 맞춰 해당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·활용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및 과업 착수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

- **(연구 과제 추진 일정과의 연계 필요)** 본 용역의 성과품은 후속 연구개발 및 실증 과정에서 발파 설계 자동화 체계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,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경우 전체 연구 과제의 추진 일정 및 성과 도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. 이에 따라 연구과제 일정에 맞춰 시스템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
- **(검수 및 활용 준비기간 확보 필요)** 개발 완료 후 시스템 검수, 최종 보완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검수 및 보완 기간 확보가 필요함. 이를 위해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과업 수행기간 내 안정적인 성과품 납품과 향후 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

2026년 09월 07일

연구책임자 : 김 광 염 김광염

붙임1.

○ **긴급입찰에 의할 경우**

- 긴급입찰 적용 시 사전규격공개(3일), 입찰공고(10일)로 일반입찰 대비 총 42일을 단축 가능

□ 근거법령

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제1호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5조 (입찰공고의 시기)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1.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.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**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**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**협상에 의한 계약**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**40일 전에 공고**하여야 한다. 다만,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**10일 전까지 공고**할 수 있다. **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 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. 삭제